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1. 19 선고 2024가단2076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22.

판결 선고 2024. 11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 C,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을 인도하라.
2. 피고는 2024. 5. 1.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의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월 9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, 선정자 C, D에게 각 월 69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[청구취지 중 월 230만 원씩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]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정왕현

별지